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26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강경숙 · 신장식 · 정춘생

박은정 • 문정복 • 임호선

김문수 · 김재원 · 황운하

김준혁 · 김준형 · 서왕진

김대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55조).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①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	
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2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	
출 요구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자료 등의 제</u>
	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5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 2.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3. ~ 6. (생략)
- ③ ~ ⑤ (생 략)

<u>2.·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2	 	 	

1. (현행과 같음)<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